

꼭! 알아 두어야 할 중소기업 지원제도

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중요 지원제도를
매월 게재하여 경영지원에 도움을드리고자 하오니
많은 관심과 활용바랍니다.

기술개발 지원

■ 친환경설계제품 기술개발지원사업

제품의 전과정(원료, 생산, 유통, 사용, 폐기)에 걸쳐 환경 부하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설계 기법을 적용한 녹색 제품의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지원 규모 • 20개사(전체 예산 20억원)

※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20%를 기술료로 징수(3년 분할)

지원 대상 •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)

지원 내용 • 친환경소재를 이용하여 제품 전주기에 걸쳐 친환경 설계 기법을 적용한 신제품 개발을 지원

※ 친환경설계 기법 : 제품계획 ▶ 제품 환경성 분석 ▶ 환경성 개선 아이디어 도출 ▶ 아이디어 평가 및 선택 ▶ 제품의 구조 및 사양 도출 ▶ 제품설계 ▶ 시제품 제작

• 지원조건 : 과제당 총사업비의 75% 이내에서 1년간 1억원 한도

지원 분야	내용
에너지 고효율 제품	에너지사용량 절감, 자원사용량 절감, 재활용·재이용 가능성 향상, 사용수명 최적화 등
환경규제 대응 제품	온실가스 저감, 유해물질 대체,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, 분해 용이성 및 소재 순수성 향상 등

신청·접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계획서 신청 : www.smtech.go.kr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과제관리 → 과제신청 → 지원사업 선택 후 → 사업계획서 내용입력
제출 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,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(해당기업) 벤처기업 등 우대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(해당기업) 최근 1년간 재무재표(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재표 가능) 기타 세부사업별로 확인이 필요한 서류 ※ 관련 서식 : 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과제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서 다운로드
문의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소기업청 녹색성장팀 : 042-481-4406, 각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: 02-3787-0522 전용정보사이트 : 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참조 전화상담은 1661-1357(중소기업 R&D 고객센터), 비즈인포(www.bizinfo.go.kr)

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

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인력, 장비, 기술 등의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
지원 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,226개사(전체 예산 817억원) ※ 10년 지원현황 : 신청과제 2,811과제 중 1,226과제 선정, 과제당 평균 5,800만원
지원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, 매출액 500억원 미만인 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사업 : 창업 9년 이하(창업과제 : 5년 이하, 일반과제 : 5년 초과 9년 이하) - 전국·국제사업 : 창업 9년 초과 또는 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업 중심
지원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사업 :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부족하여 지역 대학의 인적 또는 물적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지원(지방비와 매칭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한도 : 6개월간 5천만원, 1년간 1억원 전국사업 : 기술적 특성상 개발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거나 녹색·신성장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과제를 도출하여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한도 : 2년간 4억원 국제사업 : 외국의 대학·연구기관 또는 기업과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한도 : 2년간 4억원

▶▶▶ 기술개발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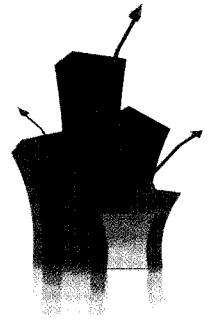
- 문의처**
- 중소기업청 기술협력과 : 042-481-4453
 - 각 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또는 기업환경개선과
 - (사)한국산학연합회 : 042-720-3309
 - 전용정보사이트 : 산학연합력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<http://sanhak.cmba.go.kr>)
 - 전화상담은 1661-1357(중소기업 R&D 고객센터), 비즈인포(www.bizinfo.go.kr)

판로지원

■ 중소기업 공동 A/S센터

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자금, 인력 등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A/S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전국적인 중소기업 A/S시스템을 구축해 제품의 A/S를 지원합니다.

- 지원 규모**
- 약 130개 업체(전체 예산 20억원)
 - ※ 공동 A/S센터 지원실적 : ('10) 120개 업체, 920개 품목
- 지원 대상**
- 국내 공장에서 일반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자체 A/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
 - 참여 가능 제품 : 가정용 전기·전자제품을 중심으로 A/S 지원 가능한 제품 선정
- 지원내용**
- 전문상담요원을 두어 제품 사용안내, 소비자 불만처리
 - A/S 대행사를 통해 제품 수리·교환·반품 요구에 대한 A/S 실시
 - 참여업체가 제품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 및 A/S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상담 자료를 DB화하여 제조업체에 제공
 - A/S 비용 및 통신료 등은 업체 부담
- 문의처**
-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: 042-481-4470
 - 중소기업유통센터 : 02-6678-9364
 - 생활가전 관련제품 : 02-6678-9361 / 정보통신 관련제품 : 02-6678-9364
 - 중소기업 공동 A/S센터 홈페이지(www.askorea.or.kr)



■ 중소기업 R&D 기획역량혁신 사업

사업성이 높고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 및 기술에 기업이 보유한 R&D자금, 인력 등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소기업의 R&D기획을 대신해 주거나, 향후 개발이 필요한 기술을 발굴해 주는 사업입니다. 세부사업으로는 R&D예비타당성 평가사업, 과제발굴연구회 지원사업, 개별기업기술로드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.

지원 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R&D예비타당성평가 : 100개사 내외(예산 30억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'10년 지원현황 : 신청기업 480개사 중 123개사 선정지원, 업체당 평균 2,250만원 • 과제개발연구회 : 40개사 연구회 내외(예산 10억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'10년 지원현황 : 신청기업 233개 연구회 중 119개 연구회 선정지원, 업체당 평균 1,500만원 • 개별기업기술로드맵 : 40개사 내외(예산 10억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'10년 지원현황 : 신청기업 129개사 중 37개사 선정지원, 업체당 평균 2,250만원
지원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R&D예비타당성평가사업, 개별기업기술로드맵 지원사업 : 『중소기업기본법』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,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• 과제발굴연구회 지원사업 : 중소기업 관련 조합, 협회, 단체 등
지원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기술에 대한 R&D예비타당성평가, 조합·단체 등의 과제발굴연구회 활동, 개별기업의 중장기적인 R&D로드맵 수립지원 등 사업별 총 소요비용의 75% 이내에서 최대 22.5백만원까지 지원 • R&D예비타당성평가사업의 경우 기획 결과가 우수한 과제(기업)는 별도 심의를 거쳐 2012년도 중소기업청 R&D사업을 통해 R&D자금을 지원
신청·접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R&D예비타당성평가사업 관리시스템(www.smbafs.or.kr)이나 개별기업기술로드맵지원사업 관리시스템(www.smtm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
심사·평가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주체의 역량, 사업계획의 타당성, 개발목표의 적정성, 연구수행능력 등을 산·학·연 전문가를 통해 평가 • (1차)서면평가 → (2차)대면평가를 통해 지원과제 최종 선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과제발굴연구회지원사업은 서면평가만 실시 • 대면평가 시 다음의 서류 확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- 최근 1년간 재무제표(R&D예비타당성평가, 개별기업기술로드맵지원)
문의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 : 042-481-4437 •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: 02-3787-0526 • 중소기업청 홈페이지(www.smba.go.kr) 참조 • 전화상담은 1661-1357(R&D 고객센터), 비즈인포(www.bizinfo.go.kr)